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윤민섭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요약문

S U M M A R Y

- 금융산업은 금융의 시스템적 위험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가 강한 규제산업이며, 규제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규제산업임은 전세계 공통임
- ICT 기술의 발전,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금융산업의 혁신 등 금융분야 규제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규제산업인 금융분야는 관련 규제를 테스트없이 변경하는 것은 금융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금융안정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금융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2016년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금융분야에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음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전 산업분야에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였는데, 금융분야는 2019년 4월 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을 통해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였음
- 금융혁신법은 규제로 인하여 등장하지 못하던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민간전문가인 위촉위원을 다수로 구성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심사권한을 부여하여 민간중심으로 금융분야에 혁신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19년부터 2022년 9월말까지 224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는데, 지정건수는 2019년 77건, 2020년 58건, 2021년 50건, 2022년 39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핀테크 사업자 등 비금융회사의 건수는 2019년 48건(62.3%), 2020년 21건(36.2%), 2021년 10건(20%), 2022년 2건(5.1%)으로 지정건수 및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혁신금융지정절차는 예비심사의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수요조사 및 컨설팅, 그리고 실무단의 검토를 통과한 안건만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금융감독 당국의 성향 및 판단에 따라 안건상정 여부가 결정되고, 상정안건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는 혁신금융심사 위원회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임

-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는 금융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테스트를 통해 혁신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해당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혁신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의 참여범위 확대, 민간전문가 추천제도 도입, 사전절차 개선 등과 같이 혁신금융지정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목차

C O N T E N T S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I.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07
II.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 현황	11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관	11
2. 규제신속확인제도	12
3. 지정대리인제도	14
4. 혁신금융서비스제도	16
5. 다른 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와와의 비교	24
III.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 검토	29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현황	29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이전 단계에 관한 검토	32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정에 대한 검토	34
4.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성에 관한 검토	37
IV. 금융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언	41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41
2. 민간전문가 추천제 도입	42
3. 사전절차의 개선	43
4. 전문가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개선	44
5. 적극적 법령정비의무로의 전환	44
참고문헌	46

I.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 금융산업은 금융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위험¹과 다른 각종 산업 및 사회 그리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금융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규제가 강화되어 있음
 - 규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라는 점은 전세계 공통임
 - 금융에 대한 규제로 인하여 규제의 변화없이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가 등장하기 어려운 분야임
 -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는 진입규제, 건전성규제, 행위규제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유형 등이 제한되고 있음

- ICT 기술의 발전,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금융산업의 혁신 등 금융분야 규제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6년 영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은 금융분야에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음
 - 금융분야의 혁신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금융상품 등의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 금융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금융상품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고, 이를

1 금융에서 시스템적 위험이라는 것은, 금융은 은행, 보험, 증권 및 기타 금융사간 상호연결성이 높기 때문에 부실이나 부도 발생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을 의미함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규제샌드박스임

-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 장소, 규모 등)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하여 시험 및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또는 완화하는 제도임

○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은 2016년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을 시작으로 전세계로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UN사무총장 포용적 금융 특별자문관(UN Secretary-General’s Special Advocate for Inclusive Finance for Development: UNSGSA)²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을 기준으로 약 50여개 국가가 금융분야에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초기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국가 현황³〉

국가	주요 내용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11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계획 발표 • 2016년 7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접수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6월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시행안 발표 • 2016년 7월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시행안 의견수렴 • 2016년 11월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가이드라인 확정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6월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시행안 발표 • 2016년 9월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시행안 의견수렴 • 2016년 12월 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시행안 확정

-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차원에서 별도의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비조치 의견서제도(No-Action letter)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금융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음

2 UNSGSA, “Early Lessons on Regulatory Innovations to Enable Inclusive FinTech: Innovation Offices, Regulatory Sandboxes, and RegTech”, 2019. 2. 50면 이하, (<https://www.unsgsa.org/publications/early-lessons-regulatory-innovations-enable-inclusive-fintech-innovation-offices-regulatory-sandboxes-and-regtech>, 최종방문일 : 2022년 10월 20일)

3 구자현·최승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0-12, 14면.

□ 우리나라도 2019년 4월 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을 통해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였음

- 금융분야에만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규제샌드박스제도를 도입하였음
 - 현재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법률이 7개가 있으며, 각 주관부처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무조정실에서 총괄하고 있음

〈규제샌드박스 운영체계⁴⁾〉



□ 이하에서는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중심으로 운영방식, 제도 현황 등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성을 찾아 보고자 함

4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sandbox/info/sandbox_intro.jsp, 최종방문일 : 2022년 10월 20일.)

II.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현황

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관

- 금융혁신법은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에 혁신금융의 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음
 - 금융혁신법은 2018년 3월 6일 발의되어, 2018년 12월 7일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음
 - 다른 규제샌드박스 법률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은 2018년 3월 6일에 금융혁신법과 함께 발의되었지만, 2018년 9월 20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9년 1월 17일에 우선 시행되었음

- 금융혁신법은 7개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금융혁신법은 규제로 인하여 등장하지 못하던 금융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및 지정대리인의 지정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구분	조문	주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부터 제3조	법률의 목적 및 정의규정 등
제2장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등	제4조부터 제12조	혁신금융서비스의 신청절차 및 지정기준 등
제3장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제13조부터 제15조	혁신금융서비스지정을 위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적용의 특례 등	제16조부터 제2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감독제한, 의무사항 등
제5장 금융혁신 지원제도	제23조부터 제26조	배타적 운영권, 규제신속확인제도, 지정대리인제도 등
제6장 보칙	제27조부터 제32조	혁신금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분쟁조정방법,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등
제7장 벌칙	제33조부터 제35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 금융혁신법은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로써 혁신금융서비스제도와 지정대리인제도 2가지를 두고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와 지정대리인은 핀테크사업자 등이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관련 규제의 내용과 운영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로 인하여 등장하는 것이 제한되고 있었던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면제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의 제공 등을 허용하는 제도임
- 반면, 지정대리인제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이나,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여 해당 금융회사외에는 수행하지 못하였던 업무를 다른 회사 등이 위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임
- 혁신금융서비스제도 및 지정대리인제도 이외에도 규제신속확인제도가 있는데, 이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금융관련 규제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임

2. 규제신속확인제도

□ 규제신속확인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서비스 사업자 등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법령 등 규제의 적용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제도를 의미함(금융혁신법 제24조)

-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의 존재와 적용가능성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데, 이는 원칙적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의 몫이었으나, 복잡한 규제내용을 규제전문가가 아닌 사업자, 특히 소규모 사업자가 모두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신속확인제도임

- 규제신속확인제도는 금융혁신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융합법 제36조,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2, 규제자유특구법 제85조 등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규제신속확인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위한 사전절차라 할 수 있음

- 규제의 적용여부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행정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한 유권해석제도와 유사하나, 유권해석제도는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해석으로 1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해석을 제공하고, 해당 해석이 소관 부처의 행위를 기속하지만
- 규제신속확인제도는 관련 규제의 유무를 확인해주는 것에 그치며 소관부처의 행위를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법령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금융혁신법 제24조 제1항)

○ 금융혁신법 제24조 제1항은 신청자의 자격을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금융회사 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는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음

- 규제신속확인을 신청한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동 규정의 내용은 신청자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규제신속확인 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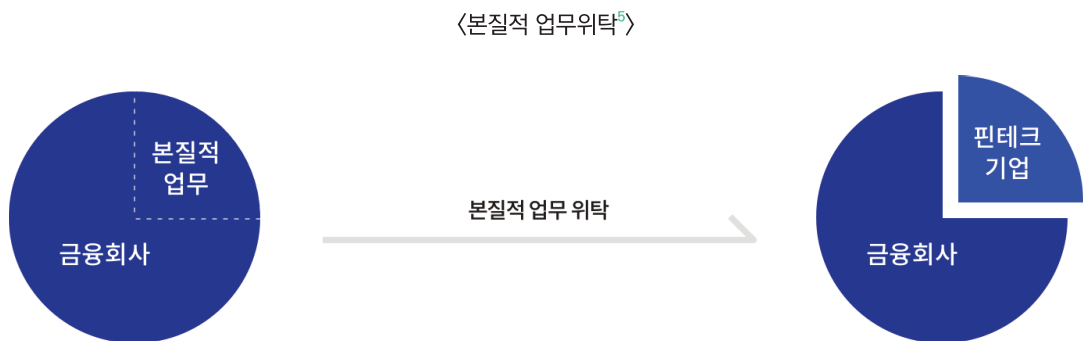
○ 규제신속확인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자에게 적용여부를 회신하여야 함

- 규제확인결과를 회신할 때에는 규제적용여부 뿐만 아니라 소관 법령 등에 따른 인·허가, 등록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인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함께 회신하여야 함

○ 규제신속확인신청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내(신청서 보완 및 다른 행정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 제외) 회신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음

3. 지정대리인제도

- 지정대리인제도는 핀테크 사업자 등이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를 수탁하여, 금융회사의 금융서비스를 핀테크 사업자가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제도임
 -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 즉, 타인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규제산업인 금융산업은 금융안정성 확보 및 금융규제 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의 위탁이 제한되어 있음
 - 금융위원회는 고시인 「금융기관의 업무위탁등에 관한 규정」(이하 ‘업무위탁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인가등을 받은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본질적인 업무란 금융회사의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금융업권별로 차이가 있음
 - 본질적인 업무로서는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 등의 대출심사 등이며, 업무위탁규정 별표 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지정대리인제도는 업무위탁규정하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본질적인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법률에서 업무위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고시인 업무위탁규정의 지정대리인제도로는 한계가 있었음

5 한국핀테크 자원센터 지정대리인(<https://sandbox.fintech.or.kr/introduce/delegate.do?lang=ko>, 최종방문일 : 2022년 10월 20일)

- 따라서 업무위탁규정에 따른 본질적인 업무위탁제한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핀테크 사업자들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제한되었고, 이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상품 등의 등장을 제한하고 있었음
 -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제42조는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융혁신법 제정과정에서 업무위탁규정에 따른 지정대리인제도를 법률로 명문화하였음

- 지정대리인제도는 혁신금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나, 신청자격, 심사절차, 지정기간, 지정효력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음
 - 지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지정대리인제도가 업무위탁에 관한 제도라는 점에서 지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전에 금융회사와 위수탁관계를 구축하여야 함
 - 지정대리인 지정심사는 법률에서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위원회 고시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서 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2명(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및 금융감독원 전략감독 부원장보)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됨
 - 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문단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회의에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지정대리인심사위원회의 심사범위는 지정대리인의 지정 뿐만 아니라 지정의 취소 또는 철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포함됨
 - 지정대리인 지정심사기준은 금융혁신법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6가지가 있음⁶
 - ① 서비스의 지역 :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6 핀테크지원센터 지정대리인(<https://sandbox.fintech.or.kr/introduce/delegate.do?lang=ko>, 최종방문일 : 2022년 10월 20일)

- ② 서비스의 혁신성 :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③ 소비자의 편익 :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④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 업무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 ⑤ 시범운영 준비 정도 : 업무위탁을 받아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
 - ⑥ 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성 :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는 신인도를 저해하거나 금융질서의 문란 또는 이용자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지 여부
-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면, 위수탁관계를 구축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지정대리인으로서 수탁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위탁자)와 지정대리인(수탁자)간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혁신금융서비스제도

- 혁신금융서비스제도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임
 - 지정대리인제도는 금융회사 즉, 타인의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는 규제로 인해서 등장하지 못하였던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를 혁신금융사업자가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 또는 완화하는 방식으로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다른 산업은 규제가 없는 경우 해당 영업을 할 수 있으나 금융산업은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에 금융산업에서 등록 등의 진입규제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허용하게 됨
- 혁신금융서비스는 사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를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하고, 금융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지정이후 사업자는 지정시 부여된 범위내에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테스트의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⁷⁾〉



□ 금융혁신법 제16조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규정하고 있음

- ①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②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관련된 금융관련 법령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령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금융업과 관련된 법령도 포함됨

- 금융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총 42개이나, 해당 법령 등에서 위임한 사항 또는 그 시행을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 등도 적용 특례대상이 포함됨(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및 제4호)

7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보도자료, 2019. 1. 3., 8면.

〈혁신금융서비스 적용 특례 대상 법률〉

금융혁신법 제2조1호 및 별표(34개 법률)	
1. 「개인정보 보호법」	18. 「수산업협동조합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0. 「신용협동조합법」
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여신전문금융업법」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3. 「외국환거래법」
7. 「금융지주회사법」	24. 「은행법」
8.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 「농업협동조합법」	2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0. 「담보부사채신탁법」	27. 「전자금융거래법」
1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 「보험업법」	29. 「전자서명법」
13. 「부동산투자회사법」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산림조합법」	3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15. 「상호저축은행법」	32. 「중소기업은행법」
16. 「새마을금고법」	33. 「한국산업은행법」
17. 「선박투자회사법」	34. 「한국수출입은행법」
금융혁신법 시행령 제2조(8개 법률)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기술보증기금법」	6. 「신용보증기금법」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7. 「예금자보호법」
4. 「무역보험법」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금융회사등 또는 국내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로 제한됨

- ‘금융회사등’은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등과 같이 금융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를 비롯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및 기금,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금융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이 포함됨

- 금융회사 등 이외에 상법상 회사로 범위를 확대한 것은 금융업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핀테크 사업자 등을 위한 것임
 - 반면, 상법상 회사 중 국내에 영업소를 둔 경우로 제한한 것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학적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금융혁신법 뿐만 아니라 금융관련 법률 및 감독역량 등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해외에서 금융라이선스를 받았거나, 해외 비금융업자가 국내에서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국내 금융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최대 2회 최장 60일의 기간 범위내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금융혁신법 제14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공고한 금융서비스별 또는 신청회사별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으나, 현재 실무에서는 핀테크지원센터(<https://fintech.or.kr>)를 통해 사전수요신청을 받고 있음
 - 사전수요신청을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핀테크지원센터 담당자 및 금융감독원 핀테크현장자문단이 컨설팅을 진행하고, 컨설팅 과정에서 안건상정이 확정되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혁신법 제13조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됨
 - 혁신금융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 위원으로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이 지명하는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센터의 장임
 - 위촉직 위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자로서 임기는 2년으로 1번 연임 가능함

〈혁신금융심사위원 자격요건 및 결격요건〉

자격요건	결격요건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기술·금융 관련 연구소에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 기술·금융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 법률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법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 혁신금융심사 실무에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이전단계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단에서 안건을 검토하고, 위촉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소위원회에 우선 상정하는 절차를 거침

○ 혁신금융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혁신금융위원회에서는 지정기준 및 부가조건 등을 심의하는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는 것은 아님

- 금융혁신법 제13조는 혁신금융소위원회의 권한을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이 아닌 심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규정에서도 의결 또는 지정한다는 표현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혁신금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는 안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지정을 위한 의결을 거쳐야 함

□ 금융혁신법 제13조 제4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를 위한 심사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심사기준으로는 혁신성, 소비자편익성 등을 9가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① 서비스의 지역 :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지 여부
- ② 서비스의 혁신성 :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 ③ 소비자의 편익 :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 ④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 규제특례 없이도 해당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특례를 적용할 경우 규제 회피 또는 규제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 ⑤ 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 신규서비스를 적절히 영위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 ⑥ 서비스의 범위,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 서비스의 범위, 업무 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 ⑦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 소비자 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 ⑧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⑨ 금융관련법령 목적의 달성 : 금융관련 법령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등이 있는지 여부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수 있는데, 지정할 때에는 혁신금융서비스 등의 업무범위 및 업무대상 등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함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것은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이전에 새로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금융시장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테스트가 될 수 있도록 범위 등의 지정이 필수적인 것이므로, 금융혁신법 제4조제2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①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종류, 내용 등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 ②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범위 등 업무 대상에 관한 사항
- ③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의 업무방법에 관한 사항
- ④ 자료제출, 검사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⑤ 금융관련법령 중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 등 규제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
- 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기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등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의 사항 이외에도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는 경우 최초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여야 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사업자는 관련규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간연장을 포함하여 최대 5년 6개월간 혁신금융서비스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 혁신금융사업자가 금융혁신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연장기간 포함) 관련 규제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개선요청을 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등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인정하여 금융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경우 해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봄. 다만, 해당 기간은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로 2회에 한정하여 각각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따라서 관련 규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는 최초 지정시 2년, 기간 연장 2년, 규제개선 요청시 6개월 및 기간 연장 2회(각 6개월)을 합산하면 최대 5년 6개월까지 가능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범위 및 조건을 준수하며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여야 하는데,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상품 등에 대한 테스트라는 점을 고려하여 각종 보고서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음(금융혁신법 제18조)
-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① 초기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
 - ② 중간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
 - ③ 최종보고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의 30일 이전까지 제출
 - 각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① 해당 기간의 혁신금융서비스 이용 건수 및 총 거래액수
 - ②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의 수 및 특징
 - ③ 해당 기간 혁신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용자로부터의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현황
 - ④ 해당 기간 이후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계획
 - ⑤ 최종보고서의 경우 특례 적용을 받고 있는 규제의 준수계획
 - 혁신금융사업자는 위의 정기보고서 이외에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영업범위 및 부가조건 등의 준수, 혁신금융서비스의 운영 등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등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혁신 금융서비스라는 사실과 그로 인한 위험성 등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

- 혁신금융서비스가 가지는 위험으로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예기치 못한 중단, 운영의 불안정성 등이 있을 수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동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에 대한 동의로서 손해배상책임의 면책에 대한 동의는 아니기 때문에 금융혁신법 제20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은 혁신금융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취소, 혁신금융사업자의 지정철회, 지정기간의 만료, 금융위원회의 중지 또는 변경 명령 등이 있는 경우 중지될 수 있음

- (지정취소)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취소할 있음(금융혁신법 제7조 제1항)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경우
 - ②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③ 혁신금융사업자가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④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⑤ 혁신금융사업자가 혁신금융법에 따른 규제 적용의 특례를 인정받지 않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⑥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 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 ⑦ 혁신금융서비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 (지정철회)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철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철회신청만으로 지정이 철회되지 않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금융혁신법 제8조)
- (기간만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규제개선요청에 따른 기간 포함)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종료하여야 함(금융혁신법 제9조)
- (중지 또는 변경명령) 금융위원회는 해당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 또는 금융질서의 문란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해당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중지를 명령하거나 기존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중지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중지명령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서비스재개를 위해서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거쳐야 함

5. 다른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와와의 비교

- 한국의 규제샌드박스와 관련된 법률은 행정규제기본법을 최상위법으로 하여 총 7개가 있으며 시행일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원칙을 담고 있는 법률로서 상위법으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규제샌드박스를 실제로 운영하는 법률은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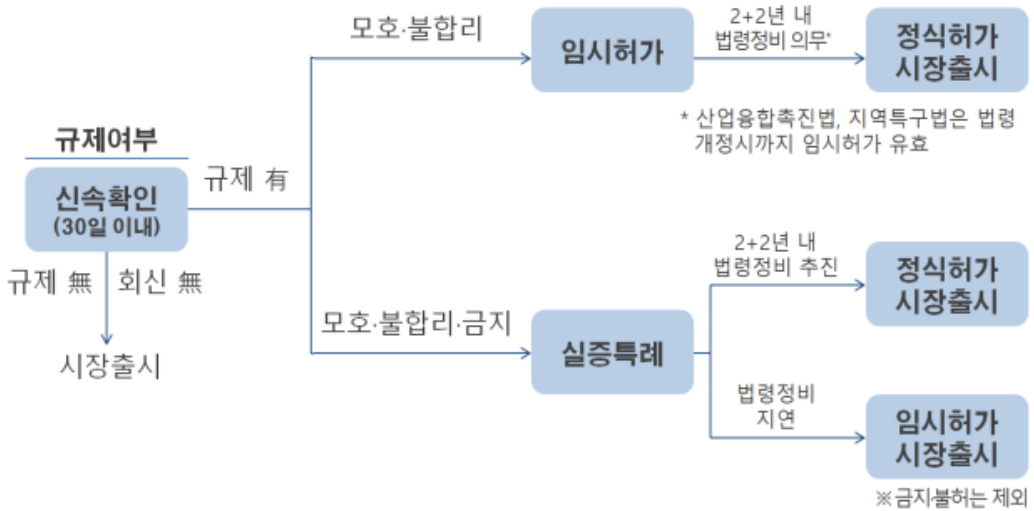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

법률명	시행일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	2019년 7월 17일	신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와 신제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추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2019년 4월 1일	금융분야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산업융합촉진법	2019년 1월 17일	새로운 융합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허가 필요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규제 신속확인', 혁신적 사업시도가 가능하도록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019년 1월 17일	국민의 생명·환경 및 개인정보가 침해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신기술·서비스는 먼저 시장출시를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원칙을 도입하고, 혁신적 기술·서비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실험·검증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019년 4월 17일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지역혁신성장특구제도'를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지역혁신성장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2020년 2월 27일	도시에 접목할 다양한 스마트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실증과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0년 12월 10일	연구개발특구에서 해당 신기술과 관련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신기술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제도를 도입

□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률은 그 내용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지만, 신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등장과 관련된 규제의 적용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함

- 규제샌드박스를 위해 각 법률은 규제신속확인제도, 임시허가제도, 실증특례 등을 적용 산업 등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적용 법률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규제신속확인제도를 통해 관련 규제를 확인한 후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등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임

〈규제샌드박스 절차⁸⁾〉



8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sandbox/info/sandbox_intro.jsp, 최종방문일 : 2022년 10월 20일)

□ 규제샌드박스에 관한 6개 개별 법률의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혁신법에서는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은 법령정비의무가 없는 테스트베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증특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⁹
 -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는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실증특례는 용어 그대로 테스트베드를 의미하며, 임시허가는 본허가를 위한 가행정행위적 성격의 처분이라는 점임¹⁰

〈규제샌드박스 법률내 규제특례 비교〉

구분	연구개발특구법	스마트도시법	금융혁신지원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대상지역	연구개발특구	스마트규제 혁신지구	전국			규제자유특구 (비수도권 한정)
적용분야	모든 분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금융 분야	ICT융합 분야	산업융합 분야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규제특례제도						
① 규제신속확인	미적용	적용				
		신제품·신서비스 등에 대해 사업자가 허가 필요 여부 및 요건 등의 규제 확인을 요청하면 30일 이내 회신				
② 임시허가	미적용	적용				
		근거법령이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에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신제품·신서비스 등의 시장출시를 위해 임시로 허가 부여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 1회 연장 가능)				
③ 실증특례	적용					
	근거법령이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거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신제품·신서비스 등의 시험·검증을 허용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 1회 연장 가능)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¹¹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9 이와 반대되는 의견으로 금융혁신법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임시허가로 분류하고 있는 의견도 있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상민의원 대표발의, 2018.11.28.)」 검토보고서, 2019. 3. 9면].

10 구자현·최승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KDI, 정책연구시리즈 2020-12, 88면.

11 앞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검토보고서, 9면

□ 각 규제샌드박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제샌드박스 지정기간 만료 후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임시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의 경우 임시허가 지정기간 만료전에 관련 규제의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관련 규제의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임시허가는 상품 및 서비스의 안정성이 입증 또는 확보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가행정행위적 처분행위이고, 관련 행정기관 등에 규제정비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간주할 수 있음

법률	조문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임시허가)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의6(임시허가) ⑬ 제9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지역특구법	제90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⑨ 임시허가 대상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등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8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반면 실증특례의 경우 안전성 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여하는 규제특례로서 관련 규제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의 연장을 간주하는 것은 제한적임

Ⅲ.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 검토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현황

□ 2019년부터 현재(2022년 9월말)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27차에 걸쳐 총 224건이 지정되었음

○ 2019년 10회 지정회의 및 77건의 지정, 2020년 8회 지정회의 및 58건 지정, 2021년 6회 지정회의 및 50건 지정, 2022년(9월말 기준) 3회 지정회의 및 39건 지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회사의 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24건 중 금융회사가 143건 (63.8%), 핀테크 사업자 등이 81건(36.2%)로 금융회사가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현황 분석〉

구분	금융회사	핀테크 사업자 등	계
총계	143건 (63.8%)	81건 (36.2%)	224건
2019년(10회)	29건 (37.7%)	48건 (62.3%)	77건
제1차 2019.4.17.	5건 (55.6%)	4건 (44.4%)	9건
제2차 2019.5.2.	2건 (22.2%)	7건 (77.8%)	9건
제3차 2019.5.15.	1건 (12.5%)	7건 (87.5%)	8건
제4차 2019.6.12.	0건 (0%)	6건 (100%)	6건
제5차 2019.6.26.	1건 (20%)	4건 (80%)	5건

구분	금융회사	핀테크 사업자 등	계
제6차 2019.7.24.	2건 (40%)	3건 (60%)	5건
제7차 2019.10.2.	5건 (45.5%)	6건 (54.5%)	11건
제8차 2019.11.6.	5건 (71.4%)	2건 (28.6%)	7건
제9차 2019.11.20.	3건 (37.5%)	5건 (62.5%)	8건
제10차 2019.12.18.	5건 (55.6%)	4건 (44.4%)	9건
2020년(8회)	37건 (63.8%)	21건 (36.2%)	58건
제11차 2020.2.19.	7건 (77.8%)	2건 (22.2%)	9건
제12차 2020.3.18.	2건 (28.6%)	5건 (71.4%)	7건
제13차 2020.4.1.	3건 (33.3%)	6건 (66.7%)	9건
제14차 2020.5.27.	3건 (75%)	1건 (25%)	4건
제15차 2020.7.22.	2건 (50%)	2건 (50%)	4건
제16차 2020.9.25.	5건 (100%)	0건 (0%)	5건
제17차 2020.11.19.	3건 (60%)	2건 (40%)	5건
제18차 2020.12.22.	12건 (80%)	3건 (20%)	15건
2021년(6회)	40건 (80%)	10건 (20%)	50건
제19차 2021.1.27.	2건 (100%)	0건 (0%)	2건
제20차 2021.2.18.	1건 (50%)	1건 (50%)	2건
제21차 2021.4.14.	1건 (33.3%)	2건 (66.7%)	3건
제22차 2021.5.26.	2건 (66.7%)	1건 (33.3%)	3건
제23차 2021.7.21.	5건 (62.5%)	3건 (37.5%)	8건
제24차 2021.10.13.	29건 (90.6%)	3건 (9.4%)	31건
2022년(3회) (9월말 기준)	37건 (94.9%)	2건 (5.1%)	39건
제25차 2022.2.16.	25건 (100%)	0건 (0%)	25건
제26차 2022.3.30.	1건 (100%)	0건 (0%)	1건
제27차 2022.9.7.	11건 (84.6%)	2건 (15.4%)	13건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현황을 분석하면, 지정회의 및 지정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핀테크 사업자의 지정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회의 및 지정건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핀테크 사업자 등의 비중은 2019년 48건(62.3%), 2020년 21건(36.2%), 2021년 10건(20%), 2022년 2건(5.1%)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도별 현황〉

구분	금융회사	핀테크 사업자 등	계
총계	143건 (63.8%)	81건 (36.2%)	224건
2019년(10회)	29건 (37.7%)	48건 (62.3%)	77건
2020년(8회)	37건 (63.8%)	21건 (36.2%)	58건
2021년(6회)	40건 (80%)	10건 (20%)	50건
2022년(3회)	37건 (94.9%)	2건 (5.1%)	39건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회의 및 지정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음
 - 금융위원회가 2020년 1월 8일에 발표한 금융규제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총 100개사/144개 서비스이고, 그 중 핀테크 사업자 등은 69개사/74개 서비스로 수요조사의 50%를 넘었음
 - 그러나 2020년에는 총 58건 중 핀테크 사업자 등은 21건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음

〈2019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¹²⁾〉

	'19.1월	'19.7월	'20.1월
금융회사	15개사/27개 서비스	41개사/96개 서비스	31개사/70개 서비스
핀테크 등	73개사/78개 서비스	101개사/123개 서비스	69개사/74개 서비스
계	88개사/105개 서비스	142개사/219개 서비스	100개사/144개 서비스

- 수요조사시 신청한 서비스 전부가 혁신금융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혁신 금융서비스의 지정회의 개최횟수 및 지정건수, 핀테크 사업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9년도 지정건수가 77건에 달했고, 핀테크 사업자 등의 비중이 62.3%(48건)을 차지했다는 것은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 도입 후 금융위원회가 1년 내에 100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적으로 임했던 결과로 판단됨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이전 단계에 관한 검토

- 금융혁신법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신청과 그 이후의 심사절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 지정신청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수요조사 등과 같은 사전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절차는 사실상 1차 심사 또는 예비심사로서 작용하고 있음
 - 현재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수요조사 및 컨설팅 업무는 사실상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단계로 활용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2020년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이 이루어진 것과 그 밖의 사안으로 분류하고 있고, 해당 자료에서 수요조사 제출건에 대해서 컨설팅 등을 거친 후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요조사 등 혁신금융서비스의 사전단계로 활용되고 있음을 할 수 있음

12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19.12.10. ~ '20.1.7.) 결과", 보도참고자료, 2020. 1. 8. 1면.

〈'19년 1월·7월 수요조사 제출건 등 처리현황¹³⁾〉

	신청		검토중	종결 또는 보완중	
	지정	미지정		신속확인 및 규제개선 건의	기타
1월 (105건)	42	7	-	19	37
7월 (219건+6*)	29+6	-	32	60	98
계	77	7	32	79	135

- 수요조사 및 컨설팅은 형식적인 부분은 핀테크지원센터가 수행하나, 수요조사 신청건에 대한 내용적 평가 및 컨설팅은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건에 대한 컨설팅은 다음과 같이 업무가 분장되어 있음

〈혁신금융 컨설팅 업무 분장〉

관련기관	컨설팅 업무 내용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서 작성요령, 개별 신청서에 대한 미비사항 및 보완사항 등을 설명
금융감독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금융규제샌드박스 신청서의 핵심 서술사항인 '규제 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에 관한 사항'의 작성을 컨설팅
각 금융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디지털금융팀, 금융투자협회 디지털혁신팀, 생명보험협회 혁신전략팀, 손해보험협회 신시장지원팀, 여신금융협회 종합기획부)	각 금융 업권별 협회의 자율 규정에 관한 규제 적용 여부를 설명하고, 필요시 금융회사와 연계도 지원

13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19.12.10. ~ '20.1.7.) 결과", 보도참고자료, 2020. 1. 8., 2면.

- 금융혁신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전절차가 1차 심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절차가 금융감독기관 및 기존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사전절차의 형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 후 컨설팅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여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안건으로 상정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음
 - 사전절차의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민간전문가가 아닌 금융감독기관 및 기존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요조사 신청안건에 대해 보수적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수적 성향의 안건만 혁신금융심사 대상 안건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금융감독기관에서는 금융의 혁신성보다 금융안정성을 추구하려는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기존 금융협회는 핀테크 사업자와 경쟁구조에 있는 사업자들의 단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

3.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정에 대한 검토

- 금융혁신법상 혁신금융서비스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해서 살펴보면, 관련 규정상으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짐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를 담당하는 혁신금융위원회는 위촉위원을 민간전문가로 운영하여,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은 금융위원회의 의결사항이고, 혁신금융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금융위원회의 의사결정을 구속하지 못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의결에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돕기 위한 조직으로 전문가 지원단 및 실무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실제 핀테크 사업자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및 출시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7월 핀테크지원센터가 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애로사항

이 조사되었음¹⁴

- 예비 수요조사 신청서 제출 이후 검토 결과 회신이 지연 (평균 9~12개월)
- 수요조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는 실무자와의 소통이 어려움
- 기업이 신청한 신청 건에 대해 현재 검토 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어 불만 증대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심사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짐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심사대상 안건의 결정 및 심사관련 자료에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실무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금융감독원세척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실무단은 금융감독원의 감독총괄국장, 디지털감독국장 및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수요조사 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단의 검토를 거쳐 상정되기 때문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혁신금융신청단계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됨
 - 혁신금융심사과정에서 실무단의 의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안건 상정 및 심사결과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실무단의 검토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는 구조임
-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위한 안건 상정을 위해 실무단의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혁신금융지정 신청시 서비스의 모델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해당 서비스의 혁신성 및 사업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 금융감독당국 중심의 실무단에 의한 의존성이 높아 혁신금융서비스 안건 지정 및 심사가 보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될 수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핀테크 사업자의 지정건수가 제도도입 초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금융위원회도 위와 같은 문제점 등을 인지하여 2022년 8월 제2차 규제개선 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단독위원장 체계를 민간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공동위원장

14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 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별첨자료5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보도자료, 2022. 8. 23. 13면

-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혁신금융심사소위원회의 2개분과(자본국/산업국·혁신국 소관)로 나누어 각 분과의 전문성을 높이고 밀도있는 심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금융감독당국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무단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전문가 지원단’)」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위의 사항을 정리하면 현행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개선 방안¹⁵⁾〉

현 행		개 선
지정신청		지정신청
		전문가 지원단(신설) 1차 검토
실무단 검토	➔ 개선	실무단 검토
혁신위 소위원회		혁신위 소위원회
혁신위 (위원장 : 금융위원장)		혁신위 (위원장 : 민간위원장+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장)
지정공고		지정공고

□ 금융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 개선방안은 현재의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수는 있

15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 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②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별첨자료5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 보도자료, 2022. 8. 23. 7면

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 여겨짐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적절하다 판단되나, 혁신금융심사 소위원회를 2개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현재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촉위원(15명)은 학계,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보호 등 4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나, 각각 민간위원이 가지는 전문영역에서 상이하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 안건에 대한 시각이 다양함
 - 소위원회를 2개 분과로 나누어 심사를 하는 경우 15명 내외의 민간 위촉위원이 각 소위원회별로 7~8명(민간 위촉위원은 비상임이므로 일정상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 위촉위원은 보다 소수가 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분산되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위원회 이후 본위원회시 소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심사위원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전문가 지원단은 전문성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상근이 아닌 비상근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예비검토 이후 실무단이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무단에 대한 의존성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움
 - 전문가 지원단을 법률·특허전문가, 금결원·금보원·신청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연구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전문가는 본업무 이외에 별개업무가 추가되는 것으로 예비검토업무에 대한 충실성에 의문이 제기됨
 - 또한 전문가 지원단이 비상임으로 구성되는 경우 지정신청한 시기에 따라 담당전문가가 달라지게되어, 동일한 기준에 의한 예비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음
 - 전문가 지원단과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간 업무상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고, 실무단의 구성에 변화가 없어, 혁신금융심사시 실무단에 대한 의존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성에 관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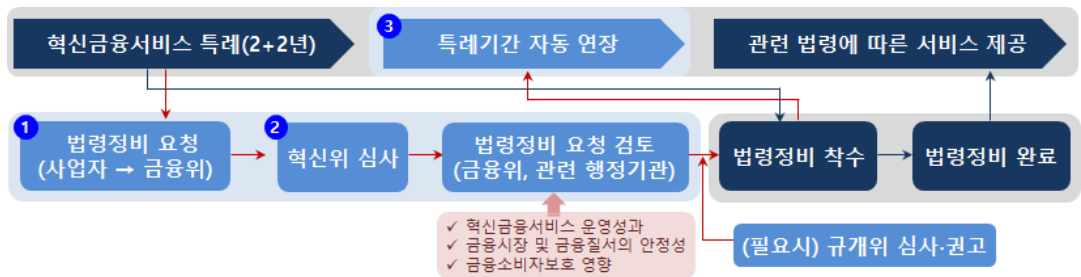
- 금융혁신법은 제정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2년 + 2년으로 입법되었으나,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 최대 5년 6개월로 확대됨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가행정행위인 임시허가가 아닌 실증특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에 법령정비무가 없으며, 지정기간(2년 + 2년)이 만료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종료되어야 함
 - 혁신금융서비스 종료 후 해당 사업자가 동일한 안건으로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가라는 점은 명확하지 않은데, 실무에서는 동일안건을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신청하는 것이 허용된 바 있음

- 2019년 12월 18일 코리아 크레딧뷰로는 '동형암호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지정기간 6개월)을 받았는데, 기간연장을 하지 않아 기간만으로 서비스제공이 종료되었고, 기간이 만료된 후 2020년 7월 22일에 동일안건으로 재지정을 받은 사례가 있음
- 지정기간이 만료된 혁신금융서비스를 다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규제회피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법령 등 관련 규제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는 최대 4년이라는 한시적 서비스에 불과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사업안정성 및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 2021년 4월 규제개선요청 및 특례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 금융혁신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정비기간까지 포함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4년에서 최대 5년 6개월로 확대되었음

〈법령정비절차 및 특례기간 연장 효과¹⁶⁾〉



□ 규제개선요청제도의 신설로 금융위원회의 법령정비의무가 명문화되었지만, 혁신금융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 금융혁신법 제10조의2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규제개선요청을 하는 경우

16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금융혁신지원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1. 4. 13. 2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하고 있어,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즉시 규제개선요청을 할 수 있음

- 규제개선요청제도의 신설로 인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사업지속성에 관한 위험은 상당부분 감소하였지만, 수동적 의무라는 한계가 있음

Ⅲ.

금융혁신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에서의 민간 참여 확대

- 금융감독당국 중심의 실무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혁신금융심사위원회로 한정되어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전문가 지원단 및 실무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지원단의 구성과 관련해서 법률·특허전문가, 금결원·금보원·신청원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 연구원 등으로 제한안하고 있어, 순수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음
 - 전문가 지원단의 예비검토, 실무단의 검토 등 각 단계별로 민간 위촉 혁신금융심사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민간 위촉 혁신금융심사위원이 각 단계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과정에서 다른 심사위원에게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실무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 민간전문가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의 모든 단계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보수적 편향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민간 전문가 특히 혁신금융심사위원이 전문가 지원단 및 실무단에 참여하면, 민간영역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음

2. 민간전문가 추천제 도입

□ 혁신금융서비스 심사과정의 보수적 편향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혁신금융심사위원 및 전문가 지원단 등에 민간전문가를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혁신법은 민간위원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관 기관의 추천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고, 전문가 지원단의 경우에도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추천제도는 도입하고 있지 않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과정에서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민간전문가 중 일부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는 추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중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①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금융·경제 전문가
- ②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총재가 추천하는 금융·경제 전문가
-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원장이 추천하는 금융·경제 전문가
- ④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금융회사 정리·퇴출 분야 전문가
- 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추천하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
- ⑥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
- ⑦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투자자 보호 분야 전문가
- ⑧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금융 전문가
- ⑨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기업금융 전문가
- 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산업조직 분야 전문가
- ⑪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이 추천하는 산업조직 분야 전문가

□ 민간전문가 추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추천의 범위를 모든 민간위원으로 확대할 수도 있으나, 금융안정성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일부 민간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됨

-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 취지상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나, 금융산업은 규제산업으로서 금융안정성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절차에서도 금융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규제전문가가 필수임

3. 사전절차의 개선

- 핀테크 사업자 등은 복잡한 금융규제를 이해하고,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지원하는 절차로서 사전절차는 유용성이 있으나, 수요조사 및 컨설팅 등과 같은 사전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예측가능성 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사전절차가 혁신금융서비스로의 진입규제로 작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요조사 및 컨설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사전절차에 관한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고시에 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핀테크지원센터의 업무규정으로 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에는 사전절차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전문가 지원단의 자격요건 및 구성, 사전절차의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수요조사결과에 대해서 2020년 1월 이후에는 공표된 바 없는데, 정기적으로 수요조사 및 신청안건 처리결과 등을 공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사실상 1차 심사 또는 예비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전절차에서 보수편향을 완화하고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참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컨설팅 기관을 금융감독원 및 기존 금융업별 협회 이외에 핀테크산업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협회 등과 같이 핀테크 업계의 협회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전문가의 참여확대는 후술하는 전문가 지원단의 구성 등을 통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됨

4. 전문가 지원단 구성 및 운영 개선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신청건에 전문가 지원단이 예비검토 및 멘토링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구성 및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금융위원회가 규제개선회의에서 제시한 전문가 지원단은 비상근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전문가 지원단의 간사로서 신청안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은 상근인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전문가 지원단의 전부가 비상근인 경우 예비검토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업무시간이 확보되기 어려워 충실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음
 - 전문가 지원단의 상근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① 핀테크 지원센터에서 관련 직접 고용하는 방안
 - ② 유관기관의 전문인력을 파견받는 방안
 - ③ 유관 연구기관 등에게 전문가 지원단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

5. 적극적 법령정비의무로의 전환

-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법령정비의무를 소극의무에서 적극의무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임시허가제도가 아닌 실증특례제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적극적 법령정비의무가 부여되지 않음
 - 혁신금융서비스는 다른 실증특례제도와 차이가 있어, 적극적 법령정비의무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판단됨
 - 산업융합촉진법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실증특례제도는 제품 등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제도인 반면,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는 안전성이 판단기준이 아니라 규제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다른 법률상 실증특례제도와 차이가 있음
- 적극적 법령정비의무로의 전환은 금융혁신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법률의 개정 이전에도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도 가능함

- 규제개선요청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전이라면 언제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규제개선요청을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행정기본법 제4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에서 행정기관 및 소속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대한 법령정비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 다만, 법령정비작업 추진에 따른 기간연장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혁신금융사업자의 규제개선요청이 있어야 하므로 금융혁신법의 개정 이전까지는 형식적으로라도 혁신금융사업자로부터 규제개선요청을 받아야 함

참고문헌

REFERENCES

UNSGSA, “Early Lessons on Regulatory Innovations to Enable Inclusive FinTech: Innovation Offices, Regulatory Sandboxes, and RegTech”, 2019.2

구자현 · 최승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금융산업에 대한 영향 고찰”, 정책연구시리즈 2020-12, KDI, 2020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2018. 7.

안수현, 「금융분야에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법적과제」, 「상사판례연구」, 제31 집 제3권, 2018. 9.

구자현 외,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KDI 2020. 4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 및 핀테크 지원 신규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 보도자료, 2018. 12. 8.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준비 등 핀테크 활성화 추진”, 보도자료, 2019. 1. 3.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의 실험장,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보도자료, 2019. 4. 1.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다”, 보도자료, 2019. 4. 17.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수요조사(‘19.12.10. ~ ‘20.1.7.) 결과”, 보도참고자료, 2020. 1. 8.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개선 관련「금융혁신지원특별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도자료, 2021. 4. 13.

금융위원회, “(금융규제혁신) ① 금융회사의 플랫폼 업무 활성화 및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②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추진”, 보도자료, 2022. 8. 23.

부처합동,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보도자료, 2022. 1. 19.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시행 100일」, 보도자료, 2019. 4. 25.

이슈페이퍼 22-21-⑤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발행일 2022년 11월 30일

발행인 김계홍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T. 044)861-0300 F. 044)863-9915

등록번호 1981. 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2. 이 책자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9-11-92325-58-3 95360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비매품

ISBN 979-11-92325-58-3